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권고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폐업신고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권익침해 방지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보호시설 설치 기준 중 ‘목욕실’의 ‘욕탕’ 규정 완화(안 별표2)
- 나. 행정처분 부과기준에 위반차수 적용 기준 마련(안 별표5)
- 다. 타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개정(안 별지 제7호 서식)
- 라.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 폐지 신고시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않고 분실사유를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안 별지 제8호 서식)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 수렴 예정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6) 중 “욕탕, 샤워설비”를 “샤워설비”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전단 중 “기준”을 “가중된 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보호비용 [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이내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신청인 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학력/재학 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 상태 (장애/질병)	취업 상태	
						직업	직장명
보호비용 종류	[] 생계비 [] 아동교육지원비 [] 아동양육비 [] 퇴소 시 자립지원금						
통지 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그 밖의 수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호비용을 신청([]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신청의 경우)

보호시설의 장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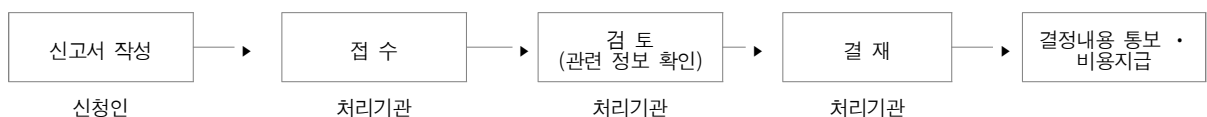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2. 수업료 또는 납입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 1부(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	---	------------

고지사항

이 신청서를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국 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보유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성폭력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신고서
[]폐지 []휴지 []운영재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소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시설	명칭 소재지	시설장 성명	
폐지 또는 운영재개 연월일	휴지기간	부터	까지
폐지·휴지 또는 운영재개 사유			

신고증·인가증 분실사유(필요시 작성)

입소자 조치 계획	귀가	명	취업	명
	다른 보호시설로의 이동	명	퇴소	명
	위탁	명	그 밖의 조치	명
교육 훈련자의 조치계획	수료	명	그 밖에 조치(수강료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	
	다른 교육훈련시설로의 이동	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성폭력피해([] 상담소 [] 보호시설 [] 교육훈련시설)의 ([] 폐지 [] 휴지 [] 운영재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상담소 신고증, 보호시설 인가증 또는 교육훈련시설 신고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고증·인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인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